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61
----------	------

제출년월일 : 2009. 9. 3.
제출자 : 안산시장

□ 개정이유

- 2009.4.21. 「주택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가감기준을 정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안산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주차요금 사전징수 방법을 개선코자 함.

□ 주요내용

- 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을 소지한자에 대하여 안산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도록 함(안 제7조 별표2 제6호 라목).
- 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두차 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던 것을 별표 8의 주차장(상업지역)에 대하여는 오후 18:00부터 사전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4항 별표8)
- 다.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도시형주택 건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함(안 제15조 별표5)
- 라. 기존 주택의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에 대한 세부기준 신설
(안 제22조 내지 제25조, 별표10, 별지 제3호서식 내지 제6호 서식)
- 마. 노외주차장 내 무단용도변경 및 주차목적외 영업행위 등 관리·운영상 부적합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 및 가감기준 신설(안 제26조 별표10)

개정조례안 : 불임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의3
- 「주택법시행령」 제3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0항 및 제11항
- 「주차장법」 제24조2
-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
- 「안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 제5조, 제7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9. 8. 7. ~ 2009. 8. 27. (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불임

- 현행조례(전문)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으며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8의 사전 주차요금 징수 주차장은 18:00부터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제4장을 제5장으로 하고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

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내 집안 주차장

제22조(보조) 시장은 기존 주택에 내 집안 주차장(이하 이 장에서 “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장물 철거비용 및 주차장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보조의 대상) 제22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3.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고 주차장과 주민편의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하 “이지파킹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제24조(보조의 방법) ① 주차장 설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 설치자금 보조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신청이 있는 경우 현장 확인 후 주차시설의 확보가능 여부 및 설치유형을 검토하여 별표 9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시장에게 주차장 설치공사 완료통지서(별지 제5호서식)와 공사비 지불 이행각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설치완료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조금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 ⑤ 이지파킹사업은 시장이 설계 및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제25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건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을 타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보칙에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6조(과징금처분 및 가감기준) ①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별표 2 제6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자(상이자 동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 동승)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로 결정·등록된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다만, 4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상이자 동승) 및 4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장애인 동승)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 후 1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1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50퍼센트를 감경하여 징수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8부터 별표 10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내 집안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지원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제7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소관 실·과		교통기획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교통기획과 이 장 원
	담당·팀장 직위·성명	주차장담당 김 준 기
	담당자 성명·전화	최 성 호 (행정 2999)

[별표 5]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 15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 ² 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간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m ² 당 1대						
3. 제 1종 균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균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m ² 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m ² 초과 150m ²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m ²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87m ² 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기숙사형)	<p>1.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숫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 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p> <p>2. 1호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 0.5대 이상,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3대 이상으로 한다.</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h style="text-align: center;">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제곱미터)</th><th style="text-align: center;">주차장설치기준 (대/제곱미터)</th></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85이하</td><td style="text-align: center;">1/85</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85초과</td><td style="text-align: center;">1/70</td></tr> </table>	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제곱미터)	주차장설치기준 (대/제곱미터)	85이하	1/85	85초과	1/70
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제곱미터)	주차장설치기준 (대/제곱미터)						
85이하	1/85						
85초과	1/70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5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5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0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70인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250m ² 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300m ² 당 1대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m ² 당 1대						

[별표 8]

사전 주차요금 징수 주차장(제8조제4항 관련)

급지	주차장명	위 치
1	동원빌딩앞	고잔동 540
1	금산빌딩앞	고잔동 540-6
1	중앙하이츠빌앞	고잔동 539-11
1	근로자시민문화센터옆	선부동 1076-12
1/노상	이삭길	고잔동 729~749일원
1/노상	진흥1길	고잔동 724-4~727일원
1/노상	진흥6길	고잔동 703~706일원
1/노상	다리간길	고잔동 682~683일원
1/노상	진흥5길	고잔동 707~718일원
1/노상	진흥2길	고잔동 769~775일원
1/노상	중보길	이동 716~721일원
1/노상	양지현길	이동 715~712일원
1/노상	솔새길	초지동 727~734일원
1/노상	청솔2길	초지동 742~744일원

비고 : 사전 주차요금 징수 시작은 18:00 부터로 한다.

[별표 9]

보조금 지급 기준(제24조제2항 관련)

구 분		보조금 지원액
내집안 주차장	담장 또는 대문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설치비용의 범위 안에서 1면 기준 최고 1,700,000원까지 보조 추가 1면당 최고 800,000원 추가 보조
	화단 또는 기타시설물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설치비용의 범위 안에서 1면 기준 최고 1,700,000원까지 보조 추가 1면당 최고 800,000원 추가 보조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설치비용의 범위 안에서 1면 기준 최고 1,700,000원까지 보조 추가 1면당 최고 800,000원 추가 보조
이지파킹 사업	이지파킹 사업으로 주차장 및 조경시설 설치	시장이 설계 및 공사를 대행하여 주차장과 조경시설 및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
〈내 집안 주차장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주차구획(직각·평행주차) 이상의 공간 확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각주차 : 2.3m × 5.0m이상 · 평행주차 : 2.0m × 6.0m이상 ○ 차로 및 기타사항은 주차장법 및 관련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 기타시설을 포함한 주택인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50%이상인 경우 보조대상으로 인정. ○ 보조금액은 설치비용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최고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 공사비 지급. ○ 가로등, 전신(통신)주 등 도로시설물 이설이 필요한 경우 100만원 까지 이설비용 추가 보조. ○ 보조신청 주택당 보조금 합계 최대 600만원까지 보조. 		

[별표 10]

과징금처분 및 가감기준(제26조 관련)

위반 행위	위반 정도	기본 과징금	가감 후 과징금	해당법조문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위반할 때	위반시	50만원	45만원	법 제6조 제1항
	1회 이상 시정명령 미이행시		50만원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할 때	위반시	50만원	45만원	법 제17조 제2항
	2회 이상 위반시		50만원	
3. 노외주차장의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	개선명령 1회 위반시	50만원	45만원	법 제23조 제2항
	개선명령 2회 위반시		50만원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	위반시	50만원	45만원	법 제25조 제1항
	2회 이상 위반시		50만원	

비고 : 위 표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위반이 상습적인 경우에는 본 기준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최고 한도액으로 가중부과 할 수 있다.

내 집안 주차장 설치자금 보조신청서

1.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전화 번호 :
- 주민등록번호 :

2. 주차장설치 사업 개요

- 주차장설치위치 : 안산시 구 동 번지
- 대지면적 : ㎡,
- 주차장설치개요 : 주차면수 : 면(직각주차 면, 평행주차 면)
※ 직각주차 2.3m×5m이상, 평행주차 2m×6m이상 공간확보

3. 공사실시기간 :부터까지

4. 보조금 신청액 : 원.

5. 첨부서류

- 서약서 1부(양식 시청구비)
- 소유권 증빙서류[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각 1부]
- 설치 전 현장사진 (전, 후, 좌, 우)
- 공사비 산출서(견적서 등) 1부

위와 같이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산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대 지 위 치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성 명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위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은 물론 이해관계인 전원은 아래 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 내 집안 주차장 설치 신청을 함에 있어 추후 민·형사상의 여하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주차장 설치로 인한 하자보수 문제는 신청인과 시공자간 문제로 당사자간 합의하여 처리하며 우리시에 책임을 요구하지 않겠음.
-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내 집안 주차장 설치자금 보조신청 시 제출한 공사비 산출 내역 및 제반증빙서류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추후에라도 혀위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기 지급 받은 보조금의 환수를 비롯한 어떠한 행정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 시장의 승인 없이 주차장 설치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 용도로 변경하거나 내 집안 주차장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제25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즉시 반환할 것임.

년 월 일

위 서약인 : (인)

안산시장 귀하

내 집안 주차장 설치공사 완료통지서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안산시 구 동 번지의 주택 담장을 헐고 주차장(평행
면, 직각__면)설치를 완료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제24조에
의거 신청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정별 사진 및 공사완료사진 편철 1부. (A4용지에 편철)

2) 공사비 지출 증명서류

- * 공사비지출 내역서
- * 폐기물처리관련 서류.
- * 레미콘납품서(송장) 및 영수증.
- * 공사비지출 영수증

3) 통장사본(신청인)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안산시장 귀하

공사비 지불 이행각서

1. 내집안 주차장 설치공사 보조금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2. 상기 본인은 안산시에서 지원하는 주차장공사를 함에 있어 시청과 건축주, 공사업체간의 상호 합의 하에 주차장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업체와의 공사비 지불에 대하여 시에서 입금한 금액 전액을 3일 이내에 공사업체로 입금/지불 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일 이 내용을 어길 시에는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제25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즉시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산시장 귀하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 ③ (생략) ④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은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가 운영 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운영 종료 시간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으며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8의 사전 주차요금 징수 주차장은 18:00부터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 제21조(생략) <신설>	제9조 ~ 제21조(현행과 같음) 제4장 내 집안 주차장
(신설)	제22조(보조) 시장은 기존 주택에 내 집안 주차장(이하 이 장에서 “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장을 철거비용 및 주차장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제23조(보조의 대상) 제22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3.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고 주차장과 주민편의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하 “이지파킹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제24조(보조의 방법) ① 주차장 설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 설치자금 보조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신청이 있는 경우 현장 확인 후 주차시설의 확보 가능 여부 및 설치유형을 검토하여 별표 9의 보조금 지급 기

	<p>준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시장에게 주차장 설치공사 완료통지서(별지 제5호서식)와 공사비 지불 이행각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설치완료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조금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p> <p>⑤ 이지파킹사업은 시장이 설계 및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p>
(신설)	<p>제25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자가 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건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을 타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p> <p>②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제4장 보칙
(신설)	<p>제26조(과징금처분 및 가감기준) ①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10과 같다.</p> <p>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 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p> <p>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제22조(권한위임)(생략)	제27조(권한위임) (현행 제22조와 같음)
제23조(시행규칙)(생략)	제28조(시행규칙) (현행 제23조와 같음)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별표2]
1.~5. (생략)	1.~5. (생략)
6. 주차요금은 다음과 같이 감면하되, 이중감면은 하지 않는다.	6. 주차요금은 다음과 같이 감면하되, 이중감면은 하지 않는다.
가. - 다. (생략)	가. - 다. (생략)
라. 국가유공자등에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7급의 상이자(상이자 동승)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인(장애인동승)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다만, 4급 내지 7급의 상이자(상이자 동승) 및 4급 내지 6급의 장애인(장애인 동승)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주차후 1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1시간이후의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50퍼센트를 감경하여 징수한다.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자(상이자 동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동승)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다만, 4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상이자 동승) 및 4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장애인 동승)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 후 1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1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50퍼센트를 감경하여 징수한다.
마. - 자. (생략)	마. - 자. (생략)
7.~10. (생략)	7.~10. (생략)

현 행		개 정 안	
[별표5] 부설주차장 설치대장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 15조 관련)		[별표5] 부설주차장 설치대장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 15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 ² 당 1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 ² 당 1대
2. 문화 및 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간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시설면적 100m ² 당 1대	2. 문화 및 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간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m ² 당 1대
3. 제 1종 균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균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m ² 당 1대	3. 제 1종 균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균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m ² 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m ² 초과 150m ²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m ²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87m ² 당 1대를 더한 대수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m ² 초과 150m ²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m ²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87m ² 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숫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 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기숙사형)	1.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숫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 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2. 1호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 0.5대 이상,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3대 이상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5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5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0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70인당 1대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5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5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0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70인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250m ² 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250m ² 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300m ² 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300m ² 당 1대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m ² 당 1대(단 장례식장은 시설면적 150m ² 당 1대)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m ² 당 1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887
----------	------

제안년월일 : 2009. 9. 18.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주차장 설치 비용을 보조하는 대상을 조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주차장 설치 비용 보조 대상에서 주민편의 시설을 제외함(안 제23조)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3조 제3호 중 “주차장과 주민편의 시설 등”을 “주차장 등”으로 한다.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23조(보조의 대상) 제22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 ~ 2. (생략)</p> <p>3.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고 <u>주차장과 주민편의 시설 등</u>을 설치하는 사업(이하 “이지파킹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p>	<p>제23조(보조의 대상) -----</p> <p>-----</p> <p>-----</p> <p>1. ~ 2. (원안과 같음)</p> <p>3. -----</p> <p>----- <u>주차장 등</u>-----</p> <p>-----</p> <p>-----</p>